





2018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담 당	팀 장	기획처장	위원장
결 재				

	학교대표	교수대표	학생대표	전문위원 대표
확 인				

1. 일 시 : 2018. 1. 18(목) 17:00분 ~ 18:12분

2. 장 소 : 대학본부 2층 교무회의실

3. 참석자 : 안○○ 위원장, 이○○ 학교대표위원, 박○○ 학교대표위원, 이○○ 학생대표위원, 정○○ 학생대표위원, 이○○ 학생대표위원, 김○○교수대표위원, 황○○ 외부전문가위원, 변○○ 외부전문가위원

4. 발언요지

1) (안○○ 위원장) 2018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고 위원 소개 및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함.

○위원장이 학생대표위원에게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위원이, 정○○위원, 이○○위원을 소개함. 위원장이 교수대표위원 김○○위원, 외부전문가위원 변○○위원, 황○○위원, 학교대표위원 이○○위원, 박○○위원 순으로 소개를 마쳤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평하게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 및 행정사항에 대해 이○○학교대표위원에게 설명을 요청함.

2) (이○○학교대표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 회의 진행 및 절차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항 및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학교대표 3명, 학생대표 3명, 교수대표 2명, 외부전문가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위원회의 역할은 등록금 책정, 예·결산 심사·의결로 각 대표위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함을 설명함.

○위원회 진행에 대한 결과 공개는 전년도 사례 등을 참고하면 모든 회의가 종료된 후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에 공개하였으며,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작 전에 참석위원 대표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기로 함.

- 금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도 동일하게 진행할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모든 위원이 동의하였음.
- 준비된 회의 자료를 통해 대학현황(구성, 학생현황, 교원현황, 최근 등록금 책정 및 등록금 수입현황 순), 외부기관 대학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함. 등록금 책정현황에 대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금 동결 4회, 2012년 5.2% 인하, 2014년 ~ 2017년 0.1% ~ 0.3% 인하하였고, 소폭 인하의 원인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음을 설명함.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정원감축, 학생감소, 등록금 인하 등으로 수입규모는 축소하였으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록금대비 교육비 지급을 등 노력을 계속하여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였음.
- 2018년 예산 운영(안)의 주요내용은 대학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절감노력이 필요함. 2018 본예산 편성(안)은 등록금 책정 이후 확정됨을 전제로 학부 등록생수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교직원인건비 동결과 글로벌융합대학 신설 등을 고려함. 주요 수입은 등록금(630.0억원), 단기수강료 등(109.4억원), 국가장학금 I, II유형 등 국고지원금(214.5억원), 기금, 산학단 전입금 등 1,077.4억원이며, 재단전입금 749.1억원 포함시 1,826.5억원임. 주요 지출은 인건비(434.0억원), 관리운영비, 연구비, 학생경비 등(305.2억원)과 국고지원금, 기금, 산학단 전입금, 재단전입금을 포함한 지출총액은 1,826.5억원임. 재단전입금은 임상교원인건비, 교직원 법정부담금 등으로 지출됨.

3) (안○○위원장) 이○○학교대표위원의 설명 후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목적에 대해 2018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이며, 등록금 수입을 기준으로 최저예산(안)으로 적정하게 예산편성(안)을 구성하였음. 2016년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정원감축(-129명)으로 인해 2019년까지 누적 516명의 학생이 감소하게 됨을 설명하고 질의사항을 요청함.

(김○○교수대표위원) 교원인건비는 동결인지 질의함.

(이○○학교대표위원) 동결로 반영하여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였음.

(김○○교수대표위원) 사립대 인건비는 최근 몇 년간 동결되었으나 국립대 교원의 인건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사립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됨.

(안○○위원장) 재정악화로 인해 자체적인 노력이 없이 방만하게 대학을 운영할 경우 적립기금은 2023년 이후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며, 대학에서는 이에대한 노력으로 향후 몇 년간 퇴직교원(약 40명)이 발생되지만, 미충원 하는 등 노력을 통해 기금을 보존할 것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대학본부, 학생, 교직원이 모두 대학의 위기상황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김○○교수대표위원) 2016년 결산서를 보면 대학의 적자규모를 임의기타기금 감소액으로 봐야하지 않는지 질의함.

(이○○학교대표위원) 임의기타기금은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기금과 그렇지 않고 고유목적성을 가진 기금을 총칭하는 것이며, 감소액이 대학의 적자규모라고 하기엔 적합하지 않음.

(신○○예산팀장) 임의기타기금 이외의 고유목적 적립금 중에서도 교비에서 지출

되어야 하지만 교비부족으로 적립금에서 지출된 부분을 고려하면 약 20억원 이상 추가해서 감안해야 할 것임.

4) (이○○학생대표위원) 2018년 예산편성(안)에서 재단전입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이○○학교대표위원) 글로벌융합대학 신설, 학생복지관 증축, 교내 주차시설 신축 등 재단지원금 증가율은 34.4%(191.6억원)임.

(안○○위원장) 시설물 신축 등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부담하지만, 운영비(인건비, 건축물관리비 등)는 재단의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김○○교수대표위원) 향후에는 결산내역에 대해 구성원에게 공유시켜줄 것을 요청함.

5) (안○○위원장) 이상으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치고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며, 각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이○○학생대표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대학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대학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는 했으나, 예산편성(안) 중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이○○학교대표위원) 예산편성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 이월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월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목적이월금을 제외하고 건물감가상각비 및 교내장학금 등으로 우선 투입됨을 원칙으로 함.

6) (안○○위원장) 지난 1월 9일(화) 16:00시 이○○학교대표가 이○○학생대표위원, 정○○학생대표위원들에게 설명한 2018학년도 학부 수업료 0.2% 인하(안)은 전제 조건으로 교육부 기존방침에 의해 제시된 인하(안)임을 설명함.

1월 11일 교육부에서 평균등록금 인상에 대한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명목등록금 동결시 정원조정에 따른 평균등록금 인상은 인상으로 보지 않음을 고시·통보하였고,

1월 15일(월) 17:00시 안○○위원장, 조○○교수대표위원, 이○○학교대표위원, 이○○학생대표위원, 정○○학생대표위원과 변경된 교육부 방침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음.

(김○○교수대표위원) 2012년 이후 인건비는 계속 동결상태이며, 수차례 인상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실철임금은 인하됨. 재정문제로 인해 인건비 인상은 어렵다는 것을 수궁하지만, 등록금에 대해서는 본부 입장에 대해 동의함.

(안○○위원장) 외부위원의 등록금 책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황○○외부전문가위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등록금 수입 증가는 불가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지출의 증가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동결을 전제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절감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인건비 인상도 고려할 부분이겠으나 불가할 것임. 학생대표는 동결을 선택한 후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변○○외부전문가위원)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료 인하가 좋겠지만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수업료의 인하는 어려울 것임.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료 동결에 동의하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학생대표위원) 지난 학생회까지는 약간의 수업료 인하가 있었음. 수업료 동결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질의함.

(안○○위원장) 현재 예산편성(안)은 정해진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예산을 편성한 것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기존사업에 대한 약간의 증액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함.

(이○○학생대표위원)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 16.0% 인하율에 대해 변경이 가능한 지, 감소액 만큼의 재정지원이 있는지, 재정지원금의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이○○학교대표위원)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합의된 사항으로 인하율은 조정할 수 없으며, 2018년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일반 재정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것으로 교육부는 발표하였고, 입학금 감소액을 100%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음. 또한 사업비는 인건비로는 집행할 수 없고 건축물관리비 등 정상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안○○위원장) 학생대표는 전국사립대 학생회와의 협조를 통해 국립대의 무한지원과 사립대에 대한 규제 및 제한 등의 역차별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교육부에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함.

(이○○학생대표위원) 대학이 처한 사정은 이해함. 수업료 동결을 가정으로 대학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 후 2차 회의에서 제시하겠음.

(안○○위원장) 대학의 제시 조건(학부 입학금 16.0% 인하, 수업료 동결)을 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확인함.

(김○○학교대표위원) 교원에 대해서도 양적측면의 동결이 불가피 하다면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요구함.

7) (안○○위원장) 학부 입학금은 인하와 수업료 동결을 전제로 학생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함.

(박○○학교대표위원) 우리학교는 학생중심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내 스포츠리그 개최, 융합전공 개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8년 한해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임. 안○○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대학에서 제시

한 학부 입학금 16.0%인하와 수업료 동결에 대해 결정 후 학생 요구사항을 후속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안○○위원장)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진행 할 것을 제안함.

(이○○학생대표위원) 학생대표의 논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며, 2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정○○학생대표위원) 이○○학생대표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학부 입학금 인하와 수업료 동결을 전제로 하고, 학생요구사항을 정리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안○○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며, 외부 전문가 위원과 교수대표위원은 개인일정으로 2차 회의에는 학생대표와 학교대표만 참석하여 개최하기로 함.

5. 차기(2차) 회의는 2018년 1월 19일(금) 11:30분에 개최하기로 함.

[붙임] : 1차 회의자료 1부.